



'06. 5. 1.

# 심사보고서

□ 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

관광건설위원회

- 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2006. 5. 1.  
관광건설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4일

상정일자 :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6. 4. 25 :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김 태 우)

제안 이유

○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대종 및 종각시설에 대하여  
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, 체계적인이고 안정적인  
관리·보존을 도모하고자 함

## □ 주요 내용

- 종의 명칭 “충북천년대종”으로 함 (안 제2조)
- 종의 보존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함 (안 제5조)
- 타종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6조)
  - 제야, 3·1절, 광복절 행사
  - 각종 기념일, 경축행사, 주요 민속일 등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관광건설전문위원 유인중)

- 조례의 제명에는 “충청북도천년대종”으로 조례안 제2조 (명칭)에는 “충북천년대종”으로 사용명칭을 달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식명칭인 충청북도 천년대종으로 정함이 바람직함.
- 또한, 안 제4조 제1호 종의 규격을 표시함에 있어 영문자 “m”을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 “미터”로 표기함은 물론,
- 안 제4조 제2호의 내용중 “21평”은 계량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과 공부상 등재된 면적에 따라 70.56제곱미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수정 이유

-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, 국어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표준용어의 사용으로 조문 표기의 정확성을 기함

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
제2조 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 “천년대종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 
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- 안 제4조 (대상시설) 제1호중  
“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”을“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”로 하고
- 동조 (대상시설)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  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 1층

7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천년대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천년대중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# 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4. 25.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의

## □ 수정 이유

-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, 국어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표준용어의 사용으로 조문 표기의 정확성을 기함

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
제2조 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 “천년대종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 
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- 안 제4조 (대상시설) 제1호중  
“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”을“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”로 하고
- 동조 (대상시설)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  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 1층

## 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 “천년대종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
○ 안 제4조 (대상시설) 제1호중

“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”을“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”로 하고

○ 동조 (대상시설)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
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 1층

# 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</p> <p><b>제2조(명칭)</b> 종의 명칭은 <u>충북천년대종(이하“천년대종”이라 하며, “종 및 종각”을 포함한다)이라 한다.</u></p> <p><b>제4조(대상시설)</b>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종 : 1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격 : <u>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</u></li> <li>- 무게 : 21톤</li> <li>- 재질 : 주석, 구리</li> </ul> <p>2. 종각 : 1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면적 : <u>21평</u></li> <li>- 건축형태 : <u>전통한식 목조 팔작지붕, 모로단청</u>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</p> <p><b>제2조(명칭)</b> ① 종의 명칭은 <u>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“천년대종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천년대종은 <u>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</u></p> <p><b>제4조(대상시설)</b> “<u>현행과 같음</u>”</p> <p>1. . . . 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격 : <u>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</u></li> <li>- . . . . .</li> <li>- . . . . .</li> </ul> <p>2. 종각 : 1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면적 : <u>70.56제곱미터</u></li> <li>- 건축형태 : <u>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, 1층</u></li> </ul>



# 충청북도천년대중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대중 및 종각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①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중(이하 "천년대중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천년대중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
**제3조(위치)** 천년대중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에 위치 한다.

**제4조(대상시설)** 천년대중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종 : 1구

- 규격 : 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
- 무게 : 21톤
- 재질 : 주석, 구리

2. 종각 : 1동

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, 1층

**제5조(관리)** ① 도지사는 천년대중의 화재, 도난, 훼손, 멸실 등의 예방 및 기타 그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천년대중의 안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**제6조(타종)** 천년대중은 제야, 3.1절,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각종 기념일, 경축행사,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타종할 수 있다.

**제7조(타종 주관부서 및 타종대상자 선정)** 천년대중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,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서 선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

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지방분권특별법

제12조(자치행정역량의 강화)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